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1000-100058-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특이심사 처리가이드



지식재산처
반도체심사추진단

발간사

특허 심사는 법률과 기술의 균형 위에서 이루어지는 고도의 전문 영역의 판단을 수반하는 것으로, 실제 심사 현장에서는 법령과 심사기준만으로는 명확히 해석하기 어려운, 이른바 ‘특이사례’들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심사관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지만, 그 해결 과정과 판단 논리는 충분히 체계화되어 공유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규 심사관들은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건에 대한 거절이유 통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숙련된 심사관들조차 생소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 방대한 심사기준 중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가이드는 이러한 실무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심사관들 뿐만 아니라 숙련된 심사관들이 심사를 진행하면서 종종 마주치게 되는 특이한 사례들을 엄선하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의견제출통지서 예시문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이심사처리가이드」를 통하여 지식재산처 내 심사관들이 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2월

지식재산처 반도체심사추진단장 김희태



목 차

I. 선출원·경합출원	1
II. 분할출원	6
III. 확대된 선출원	9
IV. 동일성 판단 기준 – 선출원 vs. 확대된 선출원	15
V. 신규사항 추가 금지	18
VI. 공지예외 주장	21
V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27
VIII. 공동 출원	32
IX.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35

I

선출원·경합출원

특이심사처리
가이드

▶▶ 관련 법령 (法36①,②,④,⑤)

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④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단서(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여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⑤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제도적 취지

하나의 발명에 대해서 중복특허를 허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선·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 같은 날에 복수의 출원이 있는 경합 상태라면, 양 출원인의 협의에 따라 정한 출원인이 특허권을 획득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양

출원인 중 누구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본 조는 중복특허의 금지를 제도적 취지로 하므로 한 출원인이 복수의 선·후출원을 한 경우 및 같은 날에 복수의 출원을 한 경우 모두에 적용된다. 또한, 출원이 취하·포기*, 거절결정되어 중복특허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또는 발명을 도용하여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출원 또는 정당권리자 출원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선출원 및 경합출원 지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등록결정 후 설정등록료 미납으로 특허권 자체가 발생하지 못한 경우는 출원 포기(法81③)에 해당한다. 그러나 설정등록된 이후 연차등록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는 특허권의 포기이지 출원 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2 심사 기준

1) 적용 요건

선출원 및 경합출원 거절이유는 확대된 선출원 거절이유와는 달리 발명자 또는 출원인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청구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청구항마다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심사대상 출원의 청구항 발명과 선출원·경합대상 출원의 청구항 발명이 서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무상 선출원 위배를 살피는 경우는, 선·후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또는 선·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여, 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2) 경합출원

실무상 경합은 출원인이나 발명자가 다른 경우보다는, 출원인이 분할출원을 할 때 분할출원의 청구항을 잘못 기재하여 원출원의 청구항과 동일하게 되거나, 분리출원을 할 때 원출원의 청구항과 동일한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에 의하여 주로 발생한다.

3) 法36② 단서 조항의 해석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란, (i)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와, (ii) 동일한 발명에 대한 2 이상의 출원 중 어느 한 출원이 특허되었거나, 法36②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4) 협의 요구에 대한 대응

협이가 성립되면 권리관계변경신고서(則 별지제20호서식)를 제출하면서, 협의 결과에 따른 경합출원의 취하 등 관련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권리관계변경신고서만 제출하고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이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협의요구서를 받은 출원인은 협의 없이 보정서를 제출하여 경합되는 대상 발명을 달리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경합 상태를 벗어나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

3 심사 사례

1) 동일 출원인 또는 동일 발명자인 상태로 선출원의 공개 전에 후출원이 있는 경우(선·후출원은 모두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

- (1) 심사청구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므로 선출원 착수시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한다. 다만 이후에 후출원을 착수시 선출원이 유력한 선행자료로 검색될 수 있다. 선출원은 등록공보가 발행되어 공개된 상황이지만,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동일하여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후출원의 청구항 발명과 선출원의 등록청구항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동일한 후출원의 청구항 발명에 대해서는 法36①에 따른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 (2) 선출원을 착수하면서 진보성 결여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음 후출원을 심사할 차례가 되어 심사에 착수할 때, 선출원 착수시 사용하였던 진보성

결여 선행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法36①을 살필 필요 없이 진보성 결여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이후 후출원에 대한 보정서가 제출되어 후출원을 다시 심사할 때, 선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선출원은 선원의 지위가 사라지므로, 보정에 의하여 기존 진보성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 또는 거절결정을 한다. 만약, 후출원을 다시 심사할 때 선출원이 설정등록되어 있고 후출원의 진보성 거절이유가 극복되는 경우, 선출원의 등록청구항과 후출원의 보정된 청구항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동일한 후출원의 보정된 청구항이 발견되면 그에 대해서는 法36①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2) 경합출원과 심사대상 당해 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1) 경합출원이 특허결정(경합출원 자체가 협의불가로 거절되었던 경우도 포함)된 경우, 심사관은 당해 출원에 대하여 경합 사유(法36②③)가 있다는 거절이유(다른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절이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한다.

※ 이 경우는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협의요구서는 보내지 않는다.

- (2) 경합출원이 특허결정되기 전이라면 심사관은 당해 출원에 대하여 경합 거절 이유를 살피지 않고 다른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i) 출원인이 보정한 후에 통지된 다른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거절결정하고, (ii) 기통지된 거절이유가 모두 해소된 경우, 심사관이 당해 출원을 다시 심사하는 때에 (ii-1) 경합출원의 특허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경합 거절이유를 제외한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출원을 등록결정하고, (ii-2) 경합출원이 특허결정되어 경합 거절이유가 존재한다면 당해 출원에 대하여 法36②③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 이 때,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ii-1), (ii-2) 절차를 진행한다.

- (3) 경합대상 출원의 청구범위가 마지막으로 보정된 날보다 늦게 해당 출원의 청구범위가 보정된 경우(다른 거절이유가 있다면 모두 최후거절이유인 경우)라면 최후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그렇지 않다면 최초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 (4) 다만, 경합출원이 특허결정 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출원의 특허여부를 결정할 때 경합출원이 특허결정되어 경합사유 거절이유(法36②③)를 통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합사유 거절이유를 다른 거절이유와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이 때 심사관은 협의요구를 함께 한다.

3) 경합출원의 협의요구서 작성

협의대상 출원들 중 어느 하나에서 ‘기타기안문작성’ 탭을 클릭하고, ‘기타통지서’에서 나머지 협의대상 출원번호를 모두 기재한 다음 협의요구서를 클릭하면, 전체 협의대상 출원들에 대한 협의요구서가 한 번에 작성된다.

o 기타통지서					
1	대상서류 접수번호		서류등의 반려이유안내서		
2	대상서류 접수번호		보정요구서(우선권, 공지예외적용, 특허기탁절차 관련 보정요구서 제외)		
3	대상서류 접수번호		무효통지서(우선권, 공지예외적용, 특허기탁절차 관련 무효처분통지서 제외)		
4	협의대상 출원번호				협의요구서

II

분할 출원

특이심사처리
가이드

▶▶ 관련 법령 (法52①)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의 기간
3.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1

심사 기준

분할 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분할 출원된 발명이 원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인지, 혹은 명시적인 기재는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신규사항 추가(法47②) 판단기준과 동일). 그리고 분할 범위 위배는 거절 및 무효사유가 된다.

* 분할출원은 출원일이 소급되는 선출원주의의 예외 규정임을 고려할 때, 분할 출원의 원출원 범위 판단 여부는 진보성 판단시 사용되는 통상의 기술자의 용이 발명 판단 여부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2

심사 사례(원출원과 분할출원에서 청구항 경합 발생시)**1) 원출원이 등록결정된 이후에 분할출원된 경우**

심사대상 출원인 분할출원에서 경합이 발생한 청구항을 대상으로 法36② 위반 거절이유를 통지한다(다른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이도 함께 통지한다). 이 때 협의요구서는 보내지 않는다. 이후 분할출원에 대한 명세서 등 보정서가 제출되면, 지적인 경합사유가 해소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원출원에 대한 진보성 거절이유통지후 분할출원된 경우 원출원 심사처리

원출원에 대한 의견서·보정서를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시, 분할출원은 아직 심사대기중인바* 분할출원 청구항과의 경합여부를 살피지 않고 등록결정한다. 물론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결정한다.

* '25년부터 분할출원의 심사순서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서로 보지 않아, 거의 대부분 원출원의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심사착수하게 된다.

3) 원출원에 대한 진보성 거절이유통지후 분할출원된 경우 분할출원 심사처리

- (1) 원출원이 등록결정되었다면 앞의 1)의 절차를 준용한다.
- (2) 원출원이 진보성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었고 그 거절결정이 확정(거절결정 불복 심판청구가 없거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되었다면, 法36④에 의해 경합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출원과의 청구항 경합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출원을 심사한다. 만약 원출원이 거절결정된 이후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되어 계속 다투고 있는 중이라면 원출원의 등록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인바, 원출원과 청구항 경합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출원을 심사한다. 한편, 분할출원을 심사하여 등록결정된 이후에 원출원이 취소환송되었다면, 원출원을 재심사할 때 앞의 1)의 절차를 준용한다.

의견제출통지서 작성례

이 사건 출원은 이 사건 출원의 원출원이 등록결정되고 설정등록되기 전에 분할출원된 것입니다. 이 사건 출원 청구항 6, 19, 21항 발명은 각각 원출원 특허 청구항 7, 11, 23항과 대비시 <중략> 서로 동일하여, 경합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출원 청구항 6, 19, 21항은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작성례

이 사건 출원의 청구항 1항 발명의 구성 X <중략> 부분은,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구성 X를 추가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사항이라 할 지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원출원의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바, 이 사건 출원발명은 분할범위 위배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III

확대된 선출원

특이심사처리
가이드

▶▶ 관련 법령 (法29③,⑤,⑦)

제29조(특허요건)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일 것
2. 그 특허출원 후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되거나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 공고된 특허출원일 것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2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3항 본문 중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본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제201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은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도적 취지

후출원의 청구항 발명을 거절시킬 수 있는 선출원의 지위는 선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국한되나, 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청구항을 넘어 그 명세서 전체로 확대한 것인데, 이는 특허제도의 이념에 따른 것이다. 특허는 공개를 대가로 독점권을 주는 제도이다. 출원시 제출한 명세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출원공개를 하는데 이는 기술 공개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함

이다. 다른 출원이 공개되기 이전에 당해 출원을 출원하였더라도 다른 출원의 출원일이 당해 출원의 출원일보다 빠르면, 다른 출원의 공개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당해 출원의 청구항 발명은 사실상 타인이 공중에 기술 공개를 한 것이므로, 당해 출원의 청구항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함이 타당하지 않다.

2 심사 기준

1) 거절이유 통지 요건

심사 대상 출원인 당해 출원의 출원 전에 다른 출원이 출원을 하고, 당해 출원의 출원 후에 다른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되어야 하며, 당해 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다른 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한다. 만약 당해 출원이 조기공개 신청 등으로 인하여 다른 출원의 출원공개보다 먼저 출원공개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출원이 공개되기만 했다면 다른 출원의 확대된 선원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

2) 예외

(1) 해당 출원의 발명자와 타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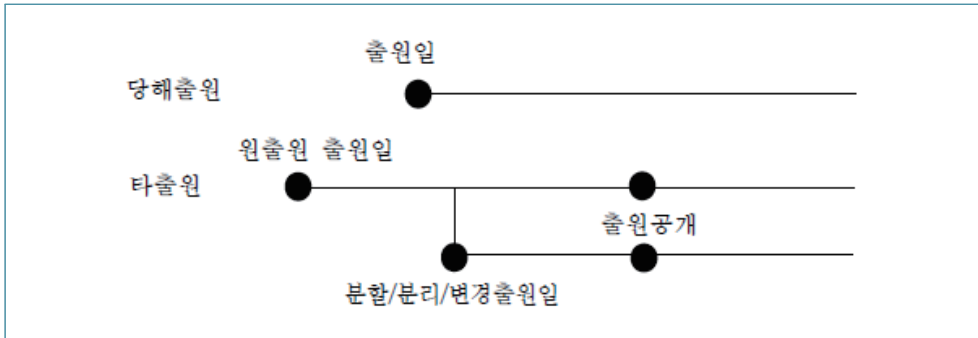
발명자가 단독인 경우 뿐만 아니라 공동발명자인 경우에도 당해 출원 및 다른 출원의 발명자 전원이 표시 상 완전히 일치할 것을 요하며, 표시상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자로 판단되면 발명자 동일로 인정한다. 출원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자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2) 해당 출원의 출원인과 타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출원인의 동일 여부는 당해 출원의 실제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약 출원인이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이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

3 심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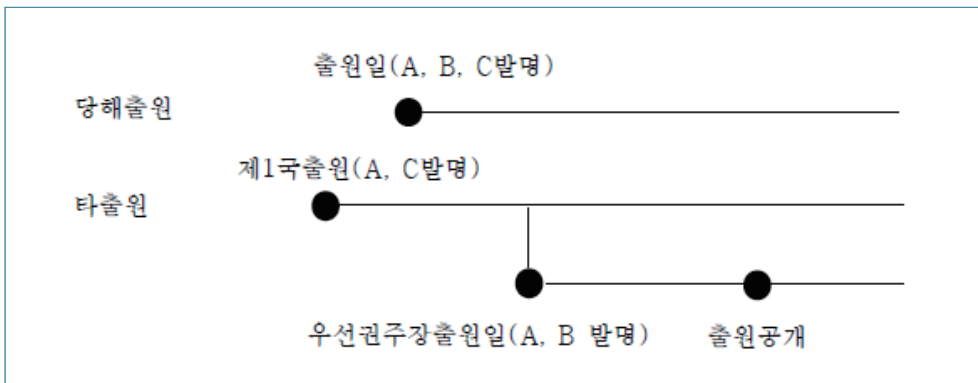
- 1) 다른 출원이 분할·분리·변경 출원일 때 다른 출원 발명의 출원일은 원출원일이 아니고, 분할·분리·변경 출원일이다.



※ 분할·분리·변경 출원의 출원일은 法29③④ 적용시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지만 분할·분리·변경 출원의 원출원의 출원일은 당해 출원보다 앞서므로, 원출원이 추후 공개된다면 이를 다른 출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다른 출원이 조약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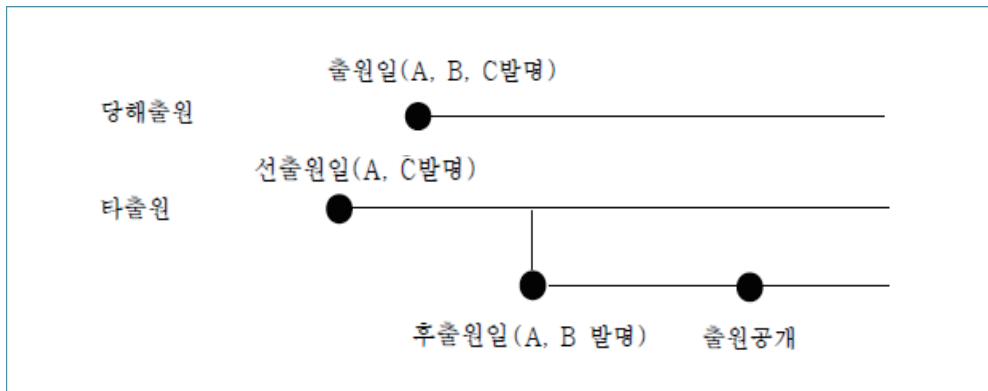
- (i) 조약당사국(제1국) 출원과 우선권주장 출원에 공통으로 기재된 발명(A)은 출원일이 조약당사자국(제1국) 출원일로 소급되지만, (ii) 우선권주장 출원에만 기재된 발명(B)은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다(法54①).



심사대상 출원 (당해 출원)	당해출원의 처리
발명 A	우선권주장 출원(다른 출원)의 발명 A의 출원일은 당해 출원의 그것보다 빠르고(출원일 소급), 국내에서 출원공개되었으므로, 당해 출원의 발명 A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
발명 B	우선권주장 출원(다른 출원)의 발명 B의 출원일은 당해 출원의 그것보다 늦으므로(출원일 불소급), 당해 출원의 발명 B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발명 C	발명 C는 국내에 출원되지 않았으므로, 당해출원의 발명 C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 확대된 선출원은 국내에 출원된 출원끼리 적용되므로 공개 요건도 국내 출원공개 또는 국내 특허공고만 가능

3) 다른 출원이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과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 모두에 공통으로 기재된 발명(A)은 그 출원일이 선출원일로 소급되지만, (ii) 후출원에만 기재된 발명(B)은 그 출원일이 소급되지 않는다(法55③④).



※ 다른 출원의 발명 C는 출원공개되지 않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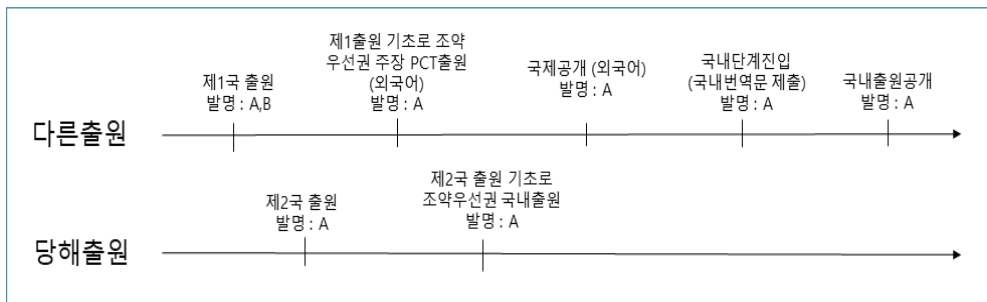
4) 다른 출원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인 경우

法29③④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라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국제출원일 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다(法29⑤⑥). 다만, 국내서면 제출기간에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취하(法201④)한 것으로 보는 외국어로 된 국제출원인 경우 다른 출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法29⑦).

※ 국제출원이 (i) 국어로 출원된 경우, 法201④이 적용되지 않아서 국내 단계로의 진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어로 국제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다른 출원의 지위를 가지는 반면, (ii) 외국어로 국제출원한 경우, 그 내용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국제출원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국내단계로 진입하여 국내에서 출원 공개되면 다른 출원의 지위를 가진다(단, 2014. 12. 31. 이전에 국제출원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 청구범위 또는 도면과 그 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발명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한다).

※ 국제출원이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시, 조약우선권 주장 기초출원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그 기초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고 확대된 선원을 적용한다. 물론 해당 국제출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제출원이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국내단계로 진입하여 국내에서 출원공개될 것을 추가로 요한다.



다른 출원의 발명 A는 국내 번역문 제출로 인하여 국내에서 공개되었고, 제1국 출원시부터 존재하였으므로,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제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제2국 출원일로 당해 출원의 청구항 발명 A가 소급되더라도, 이는 제1국 출원일 이후이므로, 당해 출원의 청구항 발명 A는 다른 출원에 의해 거절된다.

5) 확대된 선원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다른 출원의 발명자와 동일하게 발명자를 추가·정정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려고 하는 경우

출원인이 則28①②에 의거하여 착오를 이유로 출원인 및 추가·정정이 대상이 되는 발명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발명자 수정을 신청한 경우, 발명자 수정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므로, 수정된 발명자가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거절결정서 작성례

기통지한 확대된 선원 거절이유에 대해서 출원인은 다른 출원의 발명자(B)와 동일하게 하는 발명자 정정(A→B)을 신청하면서, B가 발명자임을 증빙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략>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의 발명자를 B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통지한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IV

동일성 판단 기준
- 선출원 vs. 확대된 선출원특이심사처리
가이드

▶▶ 관련 법령 (法36, 法29)

제36조(선출원)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특허요건) ③ 특허출원한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다른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같거나 그 특허 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과 다른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례

(선출원)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고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발명은 동일하고, 비록 양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역시 동일한 발명이다(대법원 84후30, 대법원 90후1154, 대법원 2007후2827 판결 참조).

(확대된 선원)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르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않아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면 두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위와 같은 정도를 벗어난다면 설령

그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두 발명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후2369, 대법원 2010후2179, 대법원 2012후1613, 대법원 2014후1181 판결 참조).

2 심사 기준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란 선행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단순한 표현의 상위, 단순한 효과의 인식의 상위, 단순한 목적의 상위, 단순한 구성의 변경, 단순한 용도의 상위 및 단순한 용도한정의 유무 등 발명의 사상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비본질적 사항(부수사항)에 차이가 있는데 불과한 경우이다. 그리고 선출원의 하위개념 발명을 후출원에서 상위개념 발명으로 표현한 경우, 심사대상 출원인 후출원 발명은 선행기술인 선출원 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거절한다.

3 심사 사례

1) 선출원(法36①)의 경우

청구항에 특정된 발명의 구성을 대비할 때 일부 구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만약 그 차이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며 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양자는 서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발명의 카테고리가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 상기 대법원 2007후2827 판결에서는 “선출원 발명이 제법 발명이고, 후출원 발명이 상기 제법에 의해 생성된 물건 발명인 경우, 양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서로 동일하고 제법에서 특정된 단계들도 해당 분야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상식에 해당하여 특별한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양 발명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음.

2) 확대된 선출원(法29③④)의 경우

발명의 구성 대비시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그쳐야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 대법원 2007후2827, 2010후2179 판결을 감안하면, 확대된 선출원(法29③④)에서의 동일성 판단은 선출원(法36①)에서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

3) 경합출원(法36②③)의 경우

중복특허를 방지하는 선출원과 같은 취지를 가지므로, 선출원에서의 동일성 판단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경합을 다룬 대법원 2005후3017 판결에서, 경합출원은 장치발명이고, 대상출원은 방법발명이었는데, 양자의 기술적 의의가 서로 같아 양자를 경합출원으로 판단하였음

V

신규사항 추가 금지

특이심사처리
가이드

▶▶ 관련 법령 (法47②)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1

제도적 취지

출원시 최초 명세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을 추후 명세서 등의 보정에 의해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동일한 발명을 제3자가 그 보정 전에 출원한 경우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허제도의 근간인 선출원주의를 잠탈하게 된다.

그리하여 새로운 발명을 추가하는 보정 발생시, (i) 보정서 자체를 채택하지 않거나 간과하여 채택한 경우에는 출원일을 보정된 날로 보아 출원일 늦춤 효과를 주는 방식과, (ii) 출원일 늦춤 효과를 주지 않고 바로 출원 자체를 불특허사유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2001. 7. 1. 이후 출원부터는 후자를 택하고 있다.

2 판례

法47②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이란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후3130 판결).

3 심사 기준

신규사항 추가 금지 여부는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인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재가 없더라도 기재되어 있다고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즉, 기재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 분할범위 위배 판단도 신규사항 추가 판단기준과 동일하다. 신규사항인지 여부의 판단 대상은 보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며, 이 중 어느 한 곳에라도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심사 사례

1)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국내·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에서의 보정

분할·분리·변경·우선권주장 출원과 원출원 및 기초출원은 서로 별개의 출원이므로, 「분할·분리·변경·우선권주장 출원을 한 날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보정된 명세서 등과 대비하여 신규사항 추가여부를 판단한다. 원출원 및 기초출원의 최초 명세서 기준이 아니다.

2) 외국어특허출원(法42조의3) 및 외국어 국제특허출원(法200조의2)에서의 보정

(i) 보정이 발생하여 신규사항 추가 여부 판단시 최종 국어번역문(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최종 국어번역문으로서 적합한 오역정정이 있는 경우 오역정정을 반영한 것)이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출원일(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외국어로 적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 또한 판단기준으로 적용된다(法47②, 法208④). 즉, 외국어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서는 번역문 주의 및 원문주의가 모두 적용되므로, 번역문 주의 및 원문주의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모두 거절이유가 된다. 다만, 등록이후 무효사유는 원문주의 위반만 해당된다.

※ 국제출원일이 2014. 12. 31. 이전인 외국어 국제출원의 심사절차에서 신규사항 추가 여부 판단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최종 국어번역문만이 판단기준이 되는 번역문 주의만 적용된다. 원문주의 위반은 등록이후 무효사유일 뿐이다.

(ii) 심사절차에는 번역문 주의 및 원문주의 위반을 모두 살피게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원문주의를 위반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므로, 모든 건에 대해서 원문주의 위반을 살필 필요는 없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살핀다.

- (예1) 제3자로부터 외국어명세서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타당하다면 외국어 명세서 등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이 심사대상 명세서등에 기재되어 있다는 法47② 전단에 따른 거절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 (예2) 심사관이 외국어출원의 국어번역문만을 보고 선행발명으로 선택하여 확대된 선원 거절이유를 통지했는데, 출원인이 외국어 명세서 등에는 그러한 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심사관이 외국어 출원의 국어번역문과 외국어 명세서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 (예3)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예비심사 보고서에 신규사항에 대한 견해가 나타나 있거나, 패밀리 출원의 심사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발명이 패밀리 출원에 기재된 경우

VI

공지에외 주장

특이심사처리
가이드

▶▶ 관련 법령 (法30①,②,③)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 출원일 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1 제도적 취지

출원 전에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공개되면, 해당 출원발명은 신규·진보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타인이 아닌 해당 발명자(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 포함)가 출원하기 전에 먼저 외부에 공개한 경우, 자신의 공개된 발명에 의해 자신의 출원이 거절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해당 발명을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개된 발명을 신규·진보성을 상실하게 하는 선행기술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출원과 동시 또는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또는 특허결정서를 받고 설정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해당 공개된 발명을 공지 예외로 해달라는 취지와 함께 공개된 해당 발명에 대한 증거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2 판례

法30에서 공지의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특허출원 당시 동일한 발명에 대해 여러 번의 공개행위가 있었고, 출원인이 그 중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만 절차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하였더라도 공지된 나머지 발명들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나머지 발명에 대해서도 신규성 상실 예외의 효과가 미친다(특허법원 2017. 6. 15. 선고 2016허7671 판결).

박람회 상품의 경우 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박람회 상품 행위 및 그와 밀접불가분한 행위에 한정될 뿐(예컨대 박람회 현장에서 관람객들에게 시험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정도는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박람회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상업적 판매 행위에까지 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판결).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할출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다면, 원출원이 자기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이상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3

공지예외 주장 및 처리 절차

1) 공지예외 주장

法30②에 기재된 ‘취지 기재’는 ‘공지예외 적용을 받고자 한다’라는 취지 자체의 기재를 의미할 뿐, 반드시 출원서에 해당 공지사실을 특정하여야만 취지 기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출원시 출원서에 공지예외 주장의 취지를 표시(출원서 서식의 공지예외 적용 박스에 체크)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공지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 공지에 대하여 공지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2) 공지예외 적용의 보완(출원과 동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則20의3①).

※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서식은 (i) 출원서 또는 그 중간서류의 서지 사항을 보정하는 [출원서 등 보정]보정서와, (ii) 공지예외적용 취지 기재를 보완하는 [출원서 등 보완]보정서와, (iii) 출원서의 요약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명세서 등 보정]보정서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므로, [출원서 등 보완]보정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 공지예외주장 절차의 무효처분

출원인이 法30 규정을 적용받고자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① 그 발명을 발표한 자와 출원인(발명자)이 다른 경우, ② 발표를 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공지된 발명을 출원한 경우, ③ 출원서에 공지예외적용 대상 증명서류, 공개형태 또는 공개일자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④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흠결을 지적하여 보정명령(法46)을 하고,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흠결을 보정하지 못하면 그 절차(공지예외주장절차, 다만 출원절차는 유효함)를 무효처분한다(法16).

※ 위 공지예외주장에 대한 보정요구서 및 무효처분통지서는 '기타기안문작성' 탭의 '불인정통지서' 란에서 작성할 수 있다.

○ 불인정통지서	
1 공지예외적용보정요구서	2 공지예외적용무효처분통지서

출원인의 공지예외적용 절차에 흠결이 있어 그 절차가 무효처분된 경우, 실제 심사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선행기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심사 기준

-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뢰에 의하여 제3자가 공개한 행위, 제3자가 권리자의 허락(묵시적인 허락도 포함한다)을 받아 인용하면서 공개한 행위도 法30①1의 자기공지행위로 본다.
- 2) 출원서에 기재된 공개의 후속 절차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 공개,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여러 번의 공개행위가 있었고 출원인이 가장 먼저 공지된 발명에 대하여만 공지예외주장을 한 경우에는, 출원서에 취지를 기재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공지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3) 자기공지가 있는 날과 공지예외주장을 한 출원일 사이에 제3자에 의해서 동일 발명의 공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제3자에 의한 공지가 자기공지된 것을 보고 지득(知得)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원은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한다.

※ 지득한 것이 명백한 경우란, 권리자가 논문이나 박람회 등에서 공개한 것을 제3자가 이를 간행물에 전재(轉載)한 경우 등을 말한다.

-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을 출원하여 특허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지된 경우에는, 이후 별도 출원절차에서 해당 공지된 발명을 공지예외주장의 대상으로 주장할 수 없다(法30①1).

- 5) 발표자, 발명자 또는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발표자 중 1인이더라도 발명자 또는 출원인과 동일하면 이들 관계를 증명하지 않아도 공지예외주장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인이 없는 경우에는 발표자가 해당 발명을 발표할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발표자가 권리자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아 공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 6) 우리나라에 진입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에 공지예외 주장과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기준일 경과 후 30일 내에 공지예외 주장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法30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法200). 다만,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므로, 자기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제출원되어야 적법한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다.
- 7) 분할출원·국내우선권 주장출원으로서, 원출원·선출원의 명세서와 분할출원·국내우선권주장 출원의 명세서에 같이 기재된 발명의 경우에는 자기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출원·선출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약우선권주장 출원의 경우 法54에 法30에 대한 소급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기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1국 출원이 아닌 조약우선권 주장출원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5 심사 사례

- 1) 공지예외주장의 보완을 통해 거절이유를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심사관은 통상의 기술자가 전체적으로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간략히 거절이유를 기재할 수 있고, 공지예외주장의 보완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쉽게 해소될 수 있음을 출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때 출원인이 공지예외 주장을 보완하여 지적된 거절이유를 해소하였고, 그에 따라 다른 공지된 문헌을 근거로 새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자 한다면 최초 의견제출통지로 한다.

- 2) 출원 전에 공개된 문헌을 근거로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더니, 출원인이 則28①②에 의거하여 착오를 이유로 출원인 및 추가된 발명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한 발명자 추가를 신청하면서, 해당 공개 문헌이 추가된 발명자에 의해 출원 전 공지된 것이라는 취지의 공지에외 주장을 한다면, 이는 발명자 추가가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이므로, 출원인에게 추가된 발명자가 진정 발명자가 맞는지에 대한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의견제출통지서 작성례

선행발명 1 : 공지에외 미주장 문헌

청구항 1, 2는 선행발명 1의 제○○○면 내지 제○○○면의 내용과 도면 X 내지 X를 참작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습니다.

보정요구서 작성례

출원인은 공지에외적용을 받기 위해 ○○○○. ○○. ○○.자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면서 공지에외적용대상 증명서류 2 건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증명서류의 저자 및 내용이 특허출원서에 기재된 출원인 및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처분통지서 작성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 ~ 를 이유로 보정요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주장하는 ... 를 뒷받침하는 증명서류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다시 살펴보아도 지적인 보정요구서의 공지에외주장 흠결이 해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공지에외 주장 절차를 무효로 합니다.

V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특이심사처리
가이드

▶▶▶ 관련 법령 (法33①본문, 法34, 法35)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4조(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특허출원이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62조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도적 취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인데,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시적으로 발명자에 일단 귀속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취지이다. 그리고 발명자는 발명을 한 사람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어서 자연인인 사람만이 가능한 반면, 승계인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자가 타인의 발명을 도용하여 출원한 경우를 모인출원이라고 하는데 모인출원은 거절사유이고, 설사 등록되었더라도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가 한 출원을 보호해주어야 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이 모인출원보다 늦은 경우에 발생하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을 모인출원일로 소급 간주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을 보호해준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너무 늦은 경우까지 출원일을 일률적으로 소급시키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소급은 모인출원이 모인사유로 거절 또는 등록무효된 지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2 판례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중략>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중략>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연·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3 심사 기준

1) 출원인이 발명을 한 사람 또는 승계인이 아닌 경우

(1) 보정명령(法46) 및 무효처분(法16)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된 사람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해당 출원에 대하여 발명자 기재방식 위반으로 보정명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法46). 만약 위 보정명령에 대응하여 발명자를 정정하지 않거나 진정한 발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발명노트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法16).

※ 위의 보정요구서, 무효처분통지서는 ‘기타기안문작성’ 탭의 ‘기타통지서’ 란에서 작성할 수 있다.

○ 기타통지서			
1	대상서류 접수번호		서류등의 반려이유안내서
2	대상서류 접수번호		보정요구서(우선권, 공지예외적용, 특허기탁절차 관련 보정요구서 제외)
3	대상서류 접수번호		무효통지서(우선권, 공지예외적용, 특허기탁절차 관련 무효처분통지서 제외)
4	협의대상 출원번호		협의요구서

(2) 거절이유통지(法33①본문) 및 거절결정(法62)

출원서에 출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고(法33①본문), 이에 대하여 그 출원인이 입증 자료(예: 발명노트, 양도증 등)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출원을 거절결정할 수 있다(法62). 그리고, 보정명령이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해당 발명자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발명자(출원인)에게 진정한 발명자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미성년자 발명의 취급

발명은 사실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이 없는 자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발명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거나 해당 출원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보정명령 또는 거절이유를 통지한다.

3)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法34, 法35)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 法33①본문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法34)되거나 무권리자의 특허가 法33①본문 규정에 의하여 무효(法35)된 다음, 정당한 권리자가 일정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출원일은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된다.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발명 범위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발명까지 무권리자가 한 출원의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그 범위를 벗어난 정당한 권리자 출원이 있다면(예: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다수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발명 중 일부의 발명만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 출원의 출원일은 소급되지 않는다.

※ 모인출원이 있더라도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3자가 인식하기 어렵고, 모인출원이 진보성 결여와 같은 발명 자체의 흠결로 거절되는 경우라면, 동일한 발명인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도 특허받지 못함이 당연하므로 출원의 실익이 없다.

실무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모인출원이 등록결정되어 등록공고된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法35조에 의한 구제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만약 法35를 근거로 한 정당한 권리자 출원에서, 해당 무효심결이 法33①본문 규정이 아니라 法44의 공동출원 위배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한 출원은 法35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아니므로, 그 출원일은 무효로 된 특허의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한다.

4 심사 사례

- 1) 출원인이 L씨로 기재되어 있으나, [발명자] 란에 발명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 되지 않는 5 세의 유아가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어서 발명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한 경우 (i) 심사관은 발명자 기재에 대한 방식 흠결을 이유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ii) 출원인이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진정한 발명자의 승계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法33①본문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 2) 미성년자 P씨는 출원인 및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출원은 고난이도 기술 분야(보안통신, 신소재, 생명공학)에 해당하여 중학생인 P씨가 해당 출원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인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i) 발명자 기재방식 위반으로 보정명령을 하고, (ii) 그로 인해 P씨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法33①본문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이 때 심사관은

‘진정한 발명자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에 심사사무취급규정 제17조에 따른 발명자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정요구서나 의견제출통지서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보정요구서 작성례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에 관한 것으로, 이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전기전자, 반도체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이 요구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출원인 및 발명자인 XXX는 출원 당시 미성년자(15세)이어서 이러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XXX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발명노트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처분통지서 작성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 ○○. ○○.자 보정요구서에서 미성년자 XXX(출원당시 12세)가 진정한 발명자인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출원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허출원서를 무효 처분합니다.

VIII

공동 출원

특이심사처리
가이드

▶▶ 관련 법령 (法33②, 法44)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44조(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1 판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 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한 자,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한 자,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2 심사 기준

1) 공동발명자의 판단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i)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

만을 제공하거나, (ii)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기만 하거나, (iii)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거나, (iv)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기만 한 자는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된 경우

발명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발명자 전원이 발명자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동발명자 전원에게 있다. 따라서 그 중의 일부의 자만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한 경우 法44조 위배로 거절이유를 통지한다(法62).

3) 발명자의 추가·정정

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출원서에 발명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된 때에는 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다수의 발명자를 기재하였다가 일부 발명자를 삭제만 하는 것도 가능). 다만, 특허 결정이 있는 때부터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발명자 추가는 불가능하고 개명·단순 오타 등으로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명자 정정이 가능하다(則28①②).

심사절차 진행중

발명자 김철수, 김갑수 → 발명자 김철수, 이대수로 변경시
출원인, 김갑수, 이대수의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서가 필요

4) 공동 직무발명의 경우

2개 회사의 공동개발 협력계획에 따라 각 회사에 소속된 종업원들이 공동으로 직무발명한 경우, 각 회사의 종업원들이 그 소속회사로 직무발명 승계를 하였다면 종국적으로 특허받을 권리는 2개 회사가 공유하므로(발명진흥법 제14조), 두 회사는 공동출원하여야 한다.

3 심사 사례

의견제출통지서 작성례

이 사건 출원의 출원일 다음날에 발간된 논문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기술되어 있는데, 논문의 제1공동저자로 甲, 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은 발명자 甲만이 발명자로 기재하고 출원한 상태여서, 공동 발명자인 乙이 배제된 상태로 출원한 것인바, 공동출원 위배로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작성례

첨부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은 주식회사 XXX가 출원하였는데, 특허 받을 권리를 출원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YYY와 출원서에 발명자로 기재되고 출원인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특허받을 권리를 출원인에게 직무승계한 △△△의 공동발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은 일부 권리자인 YYY가 배제된 상태로 출원되었으므로, 공동출원 위배로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IX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특이심사처리
가이드

▶▶ 관련 법령 (法29① 본문, 法42④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2. <생략>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특허출원)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생략>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1 판례

비즈니스 방법(BM)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출원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후494 판결).

2 심사 기준

1) 단순한 정보의 제시

단순히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보의 제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예. 녹음된 음악에만 특징이 있는 CD,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자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된 데이터).

그러나 정보의 제시가 신규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와 같은 정보의 제시 그 자체, 정보의 제시수단,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은 발명에 해당될 수 있다(문자, 숫자, 기호로 이루어지는 정보를 양각으로 기록한 플라스틱 카드 - 정보의 제시 수단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

2)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실행하는 명령에 불과한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보처리기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과 연동해 동작하는 정보처리 장치(기계), 그 동작 방법, 해당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및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14. 7. 1. 출원부터 적용)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에 해당한다.

3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컴퓨터 관련 발명)

1) 발명의 카테고리

프로그램 관련 발명은 청구범위에 「방법」 또는 「물건」 발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

2) 방법 발명

방법 발명은 시계열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처리 또는 조작, 즉 단계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단계를 특정하는 것에 의하여 청구범위에 기재한다.

3) 물건 발명

물건 발명은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형식으로 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기록매체 청구항

프로그램 기록매체, 즉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하거나 유통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2) 데이터 기록매체 청구항

데이터 기록매체, 즉 기록된 데이터 구조로 말미암아 컴퓨터가 수행하는 처리 내용이 특정되는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는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

(3)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물건의 발명으로서 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있다(‘14. 7. 1. 출원부터 적용).

※ ‘14. 7. 1. 이전까지는 청구범위의 말미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14. 7. 1. 이후부터는 ‘매체에 저장된’이라는 표현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이 때 ‘컴퓨터 프로그램’에 준하는 용어(예. 애플리케이션) 또한 청구범위 말미에 기재할 수 있지만, ‘매체에 저장된’이라는 표현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만 기재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한 것으로 보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 심사실무가이드의 취지는 매체에 고정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허용하고, 독립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심사 사례

1) 청구범위 기재가 허용되는 경우

-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 를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 컴퓨터를 수단 A, 수단 B, 수단 C, ... 로 기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 ... 를 실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 A 구조, B 구조, C 구조, ... 를 가진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매체
-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 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 를 실행시키는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2) 청구범위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 를 실행시키는 컴퓨터 프로그램
- 컴퓨터에 기능 A, 기능 B, 기능 C, ... 를 실현시키는 애플리케이션

3) 프로그램 발명의 기재불비(法42④2)

(1) 발명의 대상이 불명확한 경우

청구항 말미가 「프로그램 제품」, 「프로그램 프로덕트」, 「프로그램 산출물」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발명의 대상을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프로그램이 결합된 컴퓨터 시스템」 중 어느 것으로도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발명이 명확하지 않다.

(2) 발명의 카테고리가 불명확한 경우

청구항 말미가 「프로그램 신호」, 「프로그램 신호열」 등으로 기재된 것은

「물건」 또는 「방법」으로 발명의 카테고리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발명의 카테고리가 명확하지 않다.

의견제출통지서 작성례

- 청구항 1은 매체에 고정되지 않은 “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하고 있어, 청구하는 대상이 물건인지 방법인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1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프로그램 청구항 발명은 프로그램이 매체에 고정되어 물건발명으로 해석되어야 적법한 형식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청구항 10은 매체와 프로그램이 기재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이 매체에 고정된 것인지 여부가 문언적으로 모호하여, 물건 발명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10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이심사처리가이드

- **편찬위원 위원장** 국장 김희태
편찬위원 과장 정재훈, 사무관 홍영욱
검수위원 과장 김춘석, 과장 장현근, 과장 임현석, 과장 허영한, 과장 함중현, 서기관 홍근조
- **발 행 일** 2026년 2월
발 행 처 지식재산처 반도체심사추진단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연 락 처 042-481-5452



특이심사 처리가이드



지식재산처
반도체심사추진단

ISBN : 979-11-6884-344-8 13500

DOI : 10.8080/P9791168843448